

해 양 수 산 부

훈 계 요 구

제 목 ○○동 수산물 직매장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영도구

훈계대상자 영도구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5. 8. 3.부터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영도구 ○○○○과에서 근무하면서 수산물 직매장 건립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영도구는 관내에 수산물 유통·전문시장이 없음에 따라 수산물 전문 유통 시장 개설을 통한 지역 생산 수산물의 판매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촌 자원 복합산업화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표 1】과 같이 ‘○○동 수산물 직매장 건립사업(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동 수산물 직매장 건립사업 현황

보조사업자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계	국비	지방비	자담	
○○○○○	700	210	140	350	‘16.10.23.~’17.7월 예정

1. 사업계획 변경 승인업무 소홀

해양수산부의 「어촌자원 복합자원화 사업시행지침」(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규모(면적 등), 사업비 등 주요사항의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영도구에서 ○○동 수산물 직매장 건립을 위해서 2016년도 해양수산 사업으로 부산광역시에 신청(○○○○과-0000, ‘15. 0. 0)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건축연면적 720㎡(지하 1층, 지상 3층)로 지하 1층에 냉동·냉장시설, 지상 1층~2층에 수산물 직매장, 지상 3층에 사무실, 휴게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도구는 보조사업자인 ○○○○○가 동삼동 수산물 직매장 건립사업의 규모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검토를 거쳐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영도구는 【표 2】와 같이 보조사업자인 ○○○○○에서 ‘16. 10. 23. 보조금을 신청한 사업계획서상 사업규모인 건축연면적이 720㎡에서 540㎡로 축소되고 층별 계획도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검토나 부산광역시의 승인 절차 없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 승인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동 수산물 직매장 사업계획 변경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건축연면적	720㎡(지하 1층, 지상 3층)	540㎡(지상 4층)
층별 계획	지하 1층 : 냉동·냉장시설 지상 1~2층 : 수산물 직매장 지상 3층 : 사무실, 휴게실	지상 1층 : 활어 직매장 지상 2~3층 : 판매·유통시설 지상 4층 : 어민회관

2. 자부담 전액 확보 없이 보조금 교부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공사종류별 또는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자부담 전액을 우선 집행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도구는 보조사업자인 ○○○○○가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자부담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시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도구는 ○○○○○가 기 확보한 자부담 350백만원 중 사업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부지 구입(영도구 소유)을 위해 311백만원의 집행을 승인한 후, 사업부지 구입비로 지출한 311백만원의 자부담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2017. 1. 10. 자부담 확보)에서 22,500천원을 교부(○○○○과-00000, 2016. 00. 00.)하여 수산물 직매장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보조금을 먼저 집행되게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도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